14 자동차 도장작업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99년 1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부/프레스과에서 조립작업을 거쳐 프레스부/개선반에서 철구조물 용접 및 도색 작업을 하였다. 이후 2014년 7월 대학병원에서 T/NK 세포 림프종으로 진단 받고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 등을 받으며 추적관찰 중이다. 근로자는 질병이 작업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2014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1991년 6월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1996년 9월까지 약 5년간 차체 부 프레스과에서 판금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후, 1999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15년 6개월을 프레스부 개선반에서 도색 및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. 근무시간 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8시간이었고. 월 2회 가량 특근을 하였다. 근로 자의 주요 근무지였던 프레스부 개선반의 역할은 각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 품을 제작하는 것으로서, 개선반의 주된 업무 중 하나는 도장 작업이었다. 도장 작업 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파렛트 및 각종 철구조물 물품 등의 도색 작업은 페 인트에 희석제를 배합하여 스프레이로 뿌리는 스프레이 도색작업이 90%, 용접 후 용 접 똥을 떼어낸 후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색작업이 10% 가량 되었다 한다. 도색 작업장은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공간이 없었으며, 공장내부로 신나 등의 유기 화합물, 냄새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공장 출입문으로부터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외 부에 위치해 있었다. 이 때문에 외부 기류 및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근로자의 호흡기계 및 피부 노출이 가능한 형태였다. 도장 작업은 적게는 월 5회 가량, 많게는 2일에 한번 정도 수행하였으며, 도장 작업 1회당 평균 4~5 시간가량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. 보호구 착용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, 근로자는 주로 방독마스크가 아 닌 방진마스크를 사용하였다.

해부학적 분류 3

- 림프조혈기계암

유해인자

- 화학적요인(유기용제, 벤젠)

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던 자로 2010년경부터 구토, 어지러움, 편 도염, 잦은 코피, 코막힘 등 비염 증상이 있어서 2013년 9월 이비인후과에서 비염 수 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다. 2014년 7월 대학병원에서 재수술 받고자 입원하여 평 가한 결과 extranodal T/NK 세포 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. 이후 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시행 후 현재 추적관찰 중이다.

고찰 및 결론 6

근로자 ○○○은 1991년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1998년부터 약 15년 6개월간 개선반 에서 용접 및 도장작업을 하였다. 과거 신너의 벤젠함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조사 결과,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였던 제품 중 벤젠이 검출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 여 벤젠 노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국내 벤젠 JEM 연구결과의 세분류상의 "도 장기 조작원"의 통합노출수준 1.68ppm과 근로자 진술에 의한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누적노출량을 산정할 경우 10.4 ppm-years로 추정되었다. 근로자의 질병은 EBV와의 관련성이 잘 알려진 NK/T 세포 림프종으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종양 조직에서 EBV 가 양성으로 검출되었으며 EBV는 NK/T세포 림프종을 포함한 비호지킨림프종에 충분 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원이다. 그러나 비호지킨 림프종의 원인으로 제한적인 근거가 인정되고 있는 벤젠의 노출수준이 개선반 근무시의 도장작업으로 인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의 해당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. 끝